

1.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유효기한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22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2026년 12월 31일 -----.